

신구조문대비표
「대외무역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95호, 2023. 12. 19.,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대외무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36호, 2024. 10. 8., 일부개정]</p>
<p>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 (생략)</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전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p>
<p>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p> <p>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p> <p>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p> <p>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p> <p>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증개허가(이하 “증개허가”라 한다)</p>

<p>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과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과피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2. (생략)</p> <p>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p> <p>4. (생략)</p> <p>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p> <p>5. (생략)</p> <p>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과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과피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수출하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p> <p>4. (현행과 같음)</p> <p>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p> <p>5.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과피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p>

	<p>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p> <p>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락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락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신 설></p>	<p>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락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락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락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락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락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락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신 설></p>	<p>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p>

	<p>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락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락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p><신 설></p>	<p>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락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락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p>

	<p>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p>제34조(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p><삭 제></p>
<p>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p><삭 제></p>
<p>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생략)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 	<p>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

<p>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p>	<p>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p>	<p>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p>제40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삭 제></p>
<p>제40조의2(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 	<p><삭 제></p>

<p>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p> <p>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p>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40조의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p><삭 제></p>
<p>제41조(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p>4의2.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p> <p>5.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②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p>	<p><삭 제></p>

<p>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41조의2(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p><삭 제></p>
<p>제42조(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p><삭 제></p>
<p>제42조의2(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p><삭 제></p>

<p>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p> <p>1. ~ 7. (생략)</p> <p>②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p> <p>1. (생략)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생략)</p> <p>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생략)</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현행과 같음)</p> <p>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자율적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 및 조직도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신 설></p>	<p>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1.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2.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사용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3.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4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통제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생략) 	<p>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현행과 같음)
<p>제46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관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p><신 설> <신 설></p>	<p>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2. 법 제5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3.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5.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p>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 	<p>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p>항</p> <p>② ~ ④ (생략)</p> <p>⑤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사항</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략)</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p> <p>2.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p> <p>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생략)</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p>	<p>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p>

<p>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 6. (생략)</p> <p>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p> <p>⑤ ~ ⑪ (생략)</p> <p>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한다.</p>	<p>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p> <p>⑤ ~ ⑪ (현행과 같음)</p> <p>⑫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 제2항, 법 제59조제3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 제2항, 법 제59조제4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도지사 및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